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제2019-3회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사규관리규정 제31조(사규심의위원회)
- 나. 퀘도처-22890(2018.11.27.) “선로지장취급내규 등 3개 사규 일부개정(안) 사규심의의뢰” 외 6건
- 다. 법무처-822(2019.02.26.) “제2019-3회 사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”

2. 제2019-3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사규관리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확정 후 시행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심의일시 및 장소

일시	장소
2019.02.22. 10:00~11:10	본사 5층 기획조정실 회의실

나. 심의위원

- 위원장 : 기획조정실장 이기준
- 위 원 : 급여복지처장 황순길, 기획처장 이은기, 법무처장 엄익철, 차량운영처장 강우철, 예산처 투자심사팀장 최정진, 안전계획처 재난안전팀장 윤희태
- 간 사 : 법무처 부장 최인수

다. 심의결과(총 10건 중 원안의결 9건, 심의보류 1건)

의안번호	안건	제안부서	심의결과
제2019-5호	취업규칙 일부개정규정(안)	노사협력처	원안의결
제2019-6호	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총무처	원안의결
제2019-7호	선로지장취급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	퀘도처	원안의결
제2019-8호	퀘도작업안전예규 일부개정예규(안)		원안의결
제2019-9호	퀘도작업표준예규 일부개정예규(안)		원안의결
제2019-10호	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차량정비처	원안의결
제2019-11호	전동차사고복구시행예규 일부개정예규(안)	차량계획처	원안의결
제2019-12호	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(안)	신교통사업처	심의보류
제2019-13호	관제설비운용 및 검사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	제1종합관제센터	원안의결
제2019-14호	관제설비점검 및 검사예규 일부개정예규(안)		원안의결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사전협의 결과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안전계획처-4784호(2019. 7. 3.) 『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전협의 요청』
- 나. 안전계획처-5278호(2019. 7. 17.) 『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전협의 보완 제출』
- 다.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-2321호(2019. 7. 23.) 『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(운영절차 개정 등) 사전협의 결과 알림』

2.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(사규) 일부 변경 관련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전협의 결과

1) 변경승인 사항

연번	변경대상	주요내용	비고
1	유지관리체계 프로그램	·12.3.2 1~4, 5~8호선 점검주기 일원화 ·12.5.2 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제정 반영	
2	건축시설보수관리규정	·건축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변경 등 2건	
3	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	·특수차 신규도입에 따른 검수항목 및 주기 신설	
4	신호설비보수규정시행내규	·축전지 유지관리 기준 변경	
5	신호설비관리예규	·신호설비 유지관리 항목·주기 변경 등 1건	
6	관제설비운용 및 검사내규	·통신설비 신설, 개량에 따른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신설	
7	청원전력공급규정	·임대상가 절연저항 측정주기 변경	
8	전기설비관리예규	·변전설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신설	
9	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	·기술분야 RAMS 운영예규 제정	

2) 변경신고 사항

연번	변경대상	주요내용	보완사항
1	열차운행프로그램	·11.3.5 1~4, 5~8호선 특수차 운전원 실무수습기준 일원화	
2	유지관리프로그램	·12.2.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(2건) ·12.3.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(2건) ·12.4.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	·관련근거 조항 삭제이유 기술 ·승강장안전문설비안전관리 책임자 적격성 기준 설정근

			거 추가 기술
3	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	·3.3 유지관리 프로그램(2건)	관련근거 조항 삭제이유 기술 등
4	안전관리체계 관리규정	·특수차운전원 교육일원화 등 2건	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관련 기 변경한 프로그램 및 운영 절차의 변경내용 추가기술
5	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 처리규정	·철도사고 등 운행장애 분류기준 세분화 등 2건	운영절차에 반영한 안전상 황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방안 내용을 추가기술
6	선로지장취급내규	·특수차 실무수습교육 기준 일원화 등 2건	
7	여객운송약관	·우이신설선 및 9호선 3단계, 공항철도 제2터미널역 반영	
8	여객운송약관시행내규	·직제 개편사항 반영 ·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	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 추 가 기술

※ 세부내용 "붙임"참조

나. 기타사항

- 변경신고 사항은 **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요청** 시행
- 변경신고 사항의 **검토의견 결과를 보완(검사관과 사전협의)**하여 변경신고 시행

붙임 사전협의 결과 1부. 끝.

안전계획처장

수신자 인사처장, 법무실장, 안전조사처장, 제1관제센터장, 제2관제센터장, 영업계획처장, 차량계획처장, 승무시스템처장, 기술계획처장, 전기처장, 궤도처장, 신호처장, 전자처장, 건축처장, 장비관리단장

차장 **전재현** 부장 **임우진** 팀장 **윤희태** 처장 **심재창** 07/24

협조자

시행 안전계획처-5467 (2019.07.25.) 접수 궤도처-3479 (2019.07.25.)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/ www.seoulmetro.co.kr
전화 6311-9454 /전송 / alice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